



제대기 제작노하우에 대한 구두의 비밀유지협정 존재 여부 판단 관련 항소심 사건

21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정14년(네) 제1837호
판결 일자	2003. 1. 28.	판결 결과	항소 기각
원고 (피항소인)	코바야시 제대산업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호시노양지점, 2. 주식회사 쇼와정밀 제대기 제작소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영업 비밀	제대기 제작 노하우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유지협정, 구두비밀유지협정		

02 사건 개요

코바야시제대산업주식회사는 제대기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호시노양지점(이하 '호시노양지점')은 과실봉투를 제조하는 제대기를 사용해 과실봉투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쇼와정밀제대기제작소(이하 '쇼와정밀')은 항소인과 제대기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서 계약관계에 있다.

항소인은 쇼와정밀이 제작한 복숭아용과실봉투를 제조하는 제대기가 항소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음을 주장하며 쇼와정밀의 복숭아용과실봉투 제대기의 제조를 금지하고 설계도 및 사양서를 폐기하는 청구 및 해당 제대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호시노양지점의 과실봉투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피 고 (항소인)

항소인과 쇼와정밀사이에는 비밀유지에 관한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제대기의 제작 노하우, 판매, 누설금지에 대하여 구두로 비밀유지 협약을 맺고 있다

취업규칙으로서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수비의미를 부과 하고 있다

호시노양지점이 쇼와정밀에서 제대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항소인에게 비밀유지협정이 존재하는지 문의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다

구두의 비밀유지 협정은 내용자체가 무한정·무내용으로 비밀 유지 협정이라고 할 수 없다.

판매하는 제대기에 대하여 특정되어있지 않으며, 특정방법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서 구두의 약속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취업규칙으로서 기밀사항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수비의미를 부과 하고 있다

공장견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봐서 항소인은 영업비밀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호시노양지점의 중과실은 없다.

04 판결 요지

본건 제대기에 관한 노하우를 모두 항소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해야 하기 위해서는 명시된 서면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건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사이에서 본건 제대기에 관한 서면에 의한 결정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비밀유지협정이 구두로라도 맺어 졌다는 증거는 없으며, 항소인이 공장에 비밀번호 열쇠를 부착하여 열쇠의 관리체제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항소인공장 전체의 방법체제로 생각되고 본건 제대기 자체의 비밀관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취업규칙의 조항은 항소인의 업무상의 기밀에 관한 직원의 수비의무를 일반적으로 정한 것일 뿐, 항소인에게 있어 본건 노하우에 관한 비밀유지 정책을 개별적으로 채용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소인의 피항소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05 Key Point

비밀유지협정을 구두로 맺는 것은 입증이 매우 어렵다. 비밀유지협정은 보호하려고 하는 기술정보 및 대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기술개발이나 설비 혹은 기계의 개조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노하우나 기술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특정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의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정보의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외부인과 직원에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